

‘1965년 체제’와 재일코리안*

—강한 정치성이 낳은 정치적 취약성—

김 옹 기**

(e-mail : wkkim@hongik.ac.kr)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불신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재일코리안 |
| 2. ‘1965년체제’가 재일코리안에게 미친 영향 | 5. 결론 |
| 3. 일본 내 권익신장의 한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 | |

키워드 : 재일코리안(Koreans in Japan), 1965년(1965), 시민권(Civil Rights), 권익신장(Extension of Interests), 정치적 취약성(political vulnerability)

1. 서론

한일수교5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 외교관계는 냉랭한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인적교류는 갈수록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한국인의 방일자수만 해도 2005년에 1,747,171명에서 2014년 2,755,313명으로 불과 10년만에 100만명 이상 늘었다.¹⁾ 그런데 정작 양국의 가교역할²⁾을 자부해온 재일코리안³⁾의 존재감은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국제경영(중국, 일본)전공 조교수. 정치학 전공. 재일코리안연구.

1) 日本政府観光局(2005-2014), 「國籍別 / 目的別 訪日外客數(確定値)」.

2) 오공태(吳公太)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중앙단장은 3.1절 기념행사에서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호 증진의 가교역을 하며...”라고 역설한 바 있다. 『民團新聞』, 2015년3월15일.

3) 본고에서는 일제강점의 영향으로 일본에 이주하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한민족 총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정치적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다는 이유로 ‘재일코리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역사적 존재의 총체라는 함의가 있는 용어는 ‘재일조선인’이지만 적어도 1955년 총련 결성 이후 상황을 논하는 데까지 총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성향을 불가시화(不可視化)하기 때문이다. 민단 구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굳이 재일코리안이라는 가교가 없더라도 양국 사회에서 시민권적 풀멤버십(full membership)을 갖춘 국민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재일코리안의 희미한 존재감을 단순히 세대교체 문제로만 귀결시킬 수 있을까? 이 의문은 대한민국이 규정하는 세계 720만 재외동포들 가운데 한 집단이라는 관점으로 재일코리안을 바라볼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 예로 재일코리안은 불과 두 세대 만에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상실해버린 유일한 재외동포 집단이다. 이를 일본정부의 차별적 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의 이른바 ‘기민정책’이 합세한 합작품의 소산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 배경에 있는 것이 재일코리안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국의 분단이 야기한 정치성이다. 남북이 공존하는 재일코리안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넌 어느 쪽이냐?”라는 의심은 여타 재외동포나 내국인에게는 결코 던져지지 않는 물음이다. 또한, 일본 정착이 확실해짐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이 이들 사회 내부에 존재하게 된 사실도 모국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⁴⁾ 즉 한국사회가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후에도 재일코리안은 그 과실(果實)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강한 정치성과는 정반대로 재일코리안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존재이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로부터의 배척은 커녕 입국조차 거부당하고 있다는 점⁵⁾은 그 증거의 단적인 예라고 할

성원/지지자만 보더라도 역사성만을 가리키는 점이 분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성과 역사성이 뒤섞인 ‘조선’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 拙稿, 「なんら躊躇のない「朝鮮」使用」, 『統一日報』, 2015年9月30日.

- 4)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국정부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는 민단지원금이다. 2015년에 연간 90억 원으로 책정된 이 예산은 엔화 10억 엔에 상당하는 액수를 총련(總連)에 대항한다는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 시작이며 지금까지 약 4,000억 원이 집행되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李海讚) 의원은 이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비판을 펼치고 있다. 그 요지는 법인격이 없는 조직인 민단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국정감사가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는데다가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는 점, 민단 밖에 있는 대부분 재일동포들에게 지원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들 가운데 2%에 불과한 민단 조직(15만 명)에게 전체예산 중 약 20%가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이다. 「민단(民團) 지원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 질타」, 『OK Times』, 2014년 7월 14일. <http://www.ok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 (2015년 11월 22일 검색)
- 5) 일제강점 당시의 식민지 조선 출신임을 가리키는 조선적(朝鮮籍)자 중에는 남과 북이라는 분단국가 어느 쪽에도 귀속하지 않고 통일된 조국을 회구한다는 이유로 한국국적 취득을 꺼려하는 이들이 지식인 층 중에 존재하며, 이들을 총련 구성원/지지자와는 동일시

수 있다. 3, 4세가 중심이 된 재일코리안의 위상은 후술하듯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밑바닥의 재외동포’라는 지위를 감내해야 할 입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재일코리안을 자국에서 이 같은 처지로 내몰고 있는 주체인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권익개선을 촉구해왔다는 기이한 현상이 그동안 지속되어온 것이다.

본고는 재일코리안의 존재를 ‘대한민국 국민인 일본의 외국인’으로 파악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이들의 권익신장문제의 한계가 양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정치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이 같은 상황이 조성된 것이 한일기본조약 및 그 부속조항들로 규정된 이른바 ‘1965년체제’에 있다는 점 등을 논의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내 재일코리안의 지위 혹은 위상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가 방대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반해 이들의 한국 내 상황에 관한 논의는 당사자적 경험 또는 내셔널리즘적 관점에서 몇 개의 시도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문경수(文京洙)⁶⁾는 재일코리안의 존재를 국민국가의 틀로는 파악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하고 다중국적 논의가 시작된 한국사회의 국민 개념 변화가 재일코리안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예상했다. 한편, 테이 다이킨(정대균, 鄭大均)은 한국 거주 시절에 이질감을 통감한 끝에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국의 언어도 문화도 잃어버린 서류상의 한국인 즉 ‘페이퍼한국인(ペーパー韓国人)’에 불과한 재일코리안이 국적을 고집하는 나머지 일본에서 외국인이라는 자각 또한 결여된 채 남아 있다고 비판한다.⁷⁾ 그는 적극적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경희(趙慶喜)의 연구⁸⁾는 속성 변경 논의가 아니라 재일코리안이 ‘있는 그

할 수 없다. 조선적자의 한국 입국허가는 외무당국이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로 이루어지는데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조선적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요건을 강화...”라고 조세영(趙世瑛)이 밝혔듯이 2006년 2,949건(신청건수 2,957건)이었던 여행증명서 발급건수가 2013년에는 40건(신청건수 86건)까지 줄어들고 있다. 조세영, 「재일코리안 사회와 통일공공외교의 과제」, 재외한인학회 학술회의 발표문, 2015년 11월 27일. 자신도 한일 간 혼인으로 출생한 이른바 더블인 나카무라 일성(中村一成)은 이들의 존재를 조명하는 연재 기사를 논단지 『世界』에 2015년 7월 (제 871호)부터 연재하고 있다. 中村一成, 「思想としての朝鮮籍」, 『世界』, 各号.

6) 文京洙(2009), 「<在日>, “国民”の狭間を生きる」, 『立命館言語文化研究』, 立命館大学国際言語文化研究所, 第20卷第3号, pp.145-150.

7) 鄭大均(2001), 『在日韓国人の終焉』, 文春新書.

8) 趙慶喜(2012), 「在韓在日の現在：曖昧な「同胞」の承認にむけて」 인パクト出版社, 『인박

대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고찰했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의 모국 정착이란 '예상 외 일'이었으며 이들이 다문화적 요소의 사회적 승인을 바라면서도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는 취급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정착된 '1965년체제'와 재일코리안 간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정된 권익신장과 일본과의 역사문제의 유지, 분단국가의 각축장이 된 재일코리안사회의 여건 등이 이들의 한일 양국에서의 정치적 취약성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1965년체제' 이후 재일코리안이 일본에서 직면하고 있는 권익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내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왜 이것이 전진과 퇴보를 거듭하는가 하는 구도를 고찰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재일코리안의 취약한 정치성이 모국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며 그것이 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여기서는 모국에서의 지위가 일본에서의 삶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2. '1965년체제'가 재일코리안에게 미친 영향

'1965년체제'라는 조어(造語)가 한일국교정상화의 근거가 된 한일기본조약과 그 부속조약들로 규정된 경제와 안보를 기축으로 한 양국관계를 가리킨다는 데 크게 이론(異論)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다. 한미일관계나 남북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논의가 있어왔듯이 이들 모든 관계가 재일코리안 개인의 생활은 물론 정치적 차원에서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대해서는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전제에 앞서 필요한 것은 재일코리안이란 한일 (및 또 다른 분단국가인 북한) 양국사회의 경계인으로서 한일 각기의 근현대사를 두루 내면화한 존재라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윤건차(尹健次)는 한일 양측의 근현대사에 대해 각기 세 가지 기둥이 존재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⁹⁾ 여기에 그대로 소개하

クシヨン』185, pp.152-161.

9) 윤건차 카나가와대학(神奈川大学) 명예교수에 의한 강연 내용. 국사편찬위원회 학술회의, 「자료를 통해서 보는 한일협정」, 2015년 5월 29일.

기로 한다.

우선 한국 근현대사의 세 가지 기둥을 1) 동학 등 반봉건 투쟁, 2)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 강요, 3) 해방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남북분단 이라고 정리한 다음, 일본의 세 가지 기둥을 1) 서구 열강의 침입, 2) 서구 열강에 대항하여 일본이 천황제 국가를 창출하고 천황 중심의 국가 건설, 국민 통합을 시도했던 일, 그리고 3) 그것만으로는 현실의 강대한 침략에 대항하지 못해 스스로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를 침략했던 일 등으로 정리했다.

이 논의에 입각해 본고는 ‘1965년체제’의 기초에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시인 및 사죄 여부가 둘러싼 갈등이 깔려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는 애매모호하게 남겨진 채 결국 일본 측에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이라는 명분을 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의 전제로 삼을 것이다. 냉전체제 하에서의 미국에 의한 조기타결 압력이나 일본은 물론 북한에 비해서도 열세했던 한국의 국력문제 그리고 정통성 문제에 직면한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상에서 조기타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이 같은 상황을 구성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일코리아의 지위는 이 같은 여건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형성된 ‘1965년체제’가 재일코리아에게 어떠한 상황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하 재일한국인지위협정)’이 체결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일코리아의 일본 내 지위는 한일회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재일코리아인들의 의향이 반영되는 과정이 거의 없는 채 단지 거주권(rights of abode)만 양국정부 간에서 해결되었을 뿐 복지수급권¹⁰⁾이나 인격권, 정치참여 등으로 형성되는 시민권(citizenship) 내지 재일코리아사회에서 권익으로 불리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거주권의 근거인 이른바 협정영주권도 2세까지로 한정되었기에 세대가 내려갈수록 지위가 불안해지는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남북간의 이념갈등을 우선시한 한국정부는 소수자로서 인격형성에 필수적인 민족성 계승의 근본이 될 자국민의 민족교육 보호에도 냉담했다.¹¹⁾ 이들 요소로

10) 재일한국인지위협정은 체결 전에 이미 재일코리아인이 수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생활보호와 국민건강보험을 추진했을 뿐, 여타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11) 재일동포 민족교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성(李誠)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구성되는 권익문제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재차 논의할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의 잔사(殘渣)인 재일코리안의 동화를 유도하고 책임을 무마하려는 일본 측의 의도와 상술한 바와 같은 국력차이나 취약한 정권기반뿐만 아니라 동포보호에 대한 박약한 의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재일코리안이라는 민족문제 발생을 막겠다는 일본 측의 강력한 의지에 한국 측 또한 세대경과에 따라 일본에 동화될 거라는 ‘기대’¹²⁾를 전제로 타협적 자세로 임한 것이다. 한국정부의 재일코리안 보호 표명은 어디까지나 북한과의 대항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한일기본조약의 결과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배 책임이 결국 무마되었다. 부속조약인 이른바 청구권협정에는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 측에게 지급된 자금의 명칭부터가 ‘독립축의금’이었다. 일본정부가 일제강점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고 시인하고 사죄하는 일은 1995년 무라야마담화(村山談話)나 1998년 한일파트너십선언이 발표될 때까지 없었다.

일본정부에 의한 식민지배 책임회피는 재일코리안에게는 ‘역사적 경위’로 인한 일본 거주라는 사실을 부정 당하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경위의 시인은 재일코리안이 일본에서 권리를 촉구하는 데 정당성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의 망각이 뿌리내린 최근 일본 상황을 감안한다면 반성과 멸시의 불식이란 요원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언설은 재일코리안의 ‘역사적 경위’를 끈질기게 부정하고 자발적 이민으로 간주하려 한다. 심지어는 이들에게 주어진 거주권마저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한국인 학교의 위상 제고에 한국 측이 고집한 것은 민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북한계 민족학교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특히 북한계 학교만 폐쇄된다면 한국인 학교에 대한 요구를 철회해도 된다는 (이경호 법무부 법무국장의) 발언은 한국 측의 관심이 북한계 세력 제거에 있었지 민족성 유지를 갈망하는 교포들을 지원하려는 민족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였다.” (팔호 및 밑줄은 필자에 의함) 이성(2013),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1951-1965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p.275.

12) 한일협상 당시 한국 측 교섭당사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종필(金鐘泌)은 “재일한국인 2.3세는 완전히 일본사람이 되어 일본에 동조하는 사회인으로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이동원(李東元) 외무장관은 “재일동포는 언젠가는 귀화할 운명에 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2012년 11월 8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9927> (2015년 11월 22일 검색)

며, 이제 일본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¹³⁾ 일본 배외주의의 행동부대 격인 재특회(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의 핵심주장 또한 오늘날 재일코리아의 일본 법적지위인 특별영주제도 폐지에 있다. 일본국적 부여를 외면한 채 ‘역사적 경위’를 반영하여 세대 간의 상속을 인정한 특별한 영주권인 특별영주권을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별영주권의 존재란 일본정부가 ‘역사적 경위’의 존재를 시인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도 ‘1965년체제’가 낳은 불충분한 과거청산이 있는 것이다.

셋째, ‘1965년체제’에 따라 재일코리아사회는 분단국가들 간의 각축장으로서의 측면이 한층 두드러지게 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민단은 한국국적에의 변경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총련은 이를 저지하려고 나섰다. 약 93,000명의 남한 출신자들을 연고도 없는 북한으로 귀환시킨 북송사업 때와는 정반대의 양상(樣相)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국적을 선택해야만 이른바 협정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일한국인지위협정은 1965년 당시 조선적(朝鮮籍)자가 약 2/3를 차지했던 재일코리아사회를 한국국적자가 압도하는 상황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한일 양측의 반공(反共)이라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선적자라고 해서 모두가 총련 구성원/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에는 지식층을 중심으로 남과 북 어느 한 측의 분단국가도 택하지 않는 채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하는 이들¹⁴⁾이나 단순히 국적변경에 따른 행정적 번잡함을 꺼려하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북 중 어느 한 측의 선택이 바로 선택하지 않는 측과의 대립을 의미¹⁵⁾하게 되므로 선택을 꺼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하튼 조국 분단은 재일코리아의 ‘선택하지 않는 자유’라는 정치적 선택지를 빼앗은 것이다.

‘1965년체제’는 재일코리아인은 또 다른 정치적 제약을 몰고 오기도 했다. 재일

13) 당초 2ch과 같은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에 국한됐던 논의가 이제 공공영역에서도 대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 예로 하시모토(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재특회 회장과의 공개토론이 있는 다음 날인 2014년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재일코리아의 특별영주권에 대해 “어떤 시점에서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영주자제도로 통일시킬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會) 차원에서 재검토해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朝日新聞』, 2014年10月21日.

14) 다양한 정치성향이 공존한다는 점에서는 한국국적자도 마찬가지다. 민단 구성원/지지자 뿐만 아니라 민단과 거리를 두고 일본시민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시민층이나 무관심층 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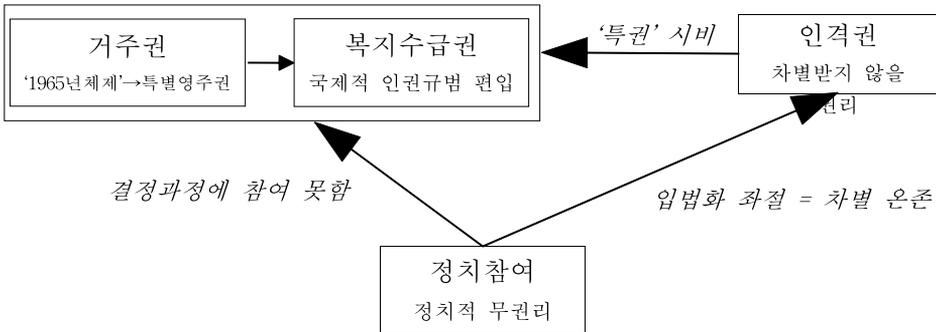
15) 서경석(2012),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반비, p.134

코리안의 한국국적 선택에는 국민국가 대한민국에의 귀속과 충성이라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교정상화에 따라 한국공관이 일본의 주요도시마다 설치되었고 한국국적을 선택한 재일코리안은 비록 말 그대로 재외에 사는 국민인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분단국가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남북이 공존하는 재일코리안사회에서 총련계 인사와의 교류가 전무한 이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재일코리안을 향하는 의심을 불식시킬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로 인해 재일코리안은 총련계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항시 충성심을 의심받는, 매우 정치적으로 취약한 존재가 된 것이다.

3. 일본 내 권익신장의 한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재일코리안의 시민적 권리 또는 권익들은 1) 거주권의 안정, 2) 인격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3) 복지수급권, 4) 정치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일국교정상화가 해결해준 것은 1) 거주권의 안정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대한민국에의 충성이 따라야만 했다. “남이냐, 북이냐?”라는 이분법, 즉 분단국가 중 어느 한 측을 선택하느냐를 밝혀야만 비로소 표명되는 충성의 이면에는 남과 북 두 개의 분단국가로부터 공히 받는 재일코리안사회 전반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 외 영역의 권익들은 재일코리안 스스로가 일본사회의 논리와 일본시민들과의 공조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림 1> 재일코리안의 일본 내 권익 구도



출처: 필자 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재일코리아인의 일본 내 지위는 오늘날까지 개선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앞서 논했듯이 ‘특권’ 시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구도를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이하 각 권익의 영역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인격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살펴보면 재일코리아인이 일본사회에서 일본시민들과 공조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 1970년 재일코리아인 2세 박정석(朴鐘碩)이 당사자가 된 히타치취직차별사건(日立就職差別事件)에서 지원의 중심에 섰던 것은 민단, 총련과는 무관한 2세들과 일본시민들의 공조에 의한 ‘박군을 둘러싼 모임(朴君を囲む会)’이라는 모임이었다. 일본 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을 원칙으로 삼는 총련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생활자단체’임을 앞세우고 있는 민단 또한 당시에는 일본 정주를 전제하지 않았기에 일본에서의 권익문제에는 냉담했다.

1980년대 지문날인철폐운동에서도 같은 구도가 재현되었다. 시민적 행태를 지닌 재일코리아인 개인들에 의한 날인거부의 고리가 일본시민과의 연대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국제여론의 관심을 모아 일본정부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민족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본국에 대한 충성을 의심받는 재일코리아인의 특성상 민단과 총련은 공히 동포 권익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본국의 의지보다 선제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도는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혐한(嫌韓)현상과 재일코리아인을 겨냥한 헤이트스피치/크라임(hate speech/crime) 문제에서도 역시 재현되었다. 2013년 주일한국대사관은 일본 지자체들을 상대로 배외주의단체들에게 도로사용허가를 발부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이례적’ 행동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민단은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혐한시위가 시작된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1년 반 동안 표면화될만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채 동포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관을 계속했다.¹⁶⁾ 민단이 구체적 대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상반기에 중앙본부에 인권옹호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다. 당시 그리고 현재도 배외주의자들의 시위 현장에서 맞서고 있는 것은 민단·총련과 무관한 3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단과는 무관한 재일코리아인과 일본 시민들이다.

16) 『統一日報』, 2015년2월25일.

다음으로 복지수급권 문제를 보기로 한다. 오늘날 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 말부터 발생한 인도차이나난민이 일본으로 유입했다는 ‘흑선(黑船)’의 영향이 크다. 당시 일본의 외국인정책이란 재일코리안에 대한 처우를 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일코리안에 대한 권리 부여에 인색한 일본정부의 행태는 즉 난민을 처우할만한 제도기반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 같은 상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고 거센 비판을 받게 되자 일본정부가 비로소 대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규범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1979년 국제인권규약, 1981년 난민조약을 각각 비준하기에 이르렀다. 재일코리안은 이에 따른 간접적 영향으로 국민연금과 아동수당, 공공주택 입주 등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참여 문제에 있어서는 복지수급권과는 대조적으로 몇 개의 지자체¹⁷⁾가 예외적으로 주민투표 참여를 인정할 뿐 완전한 무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주를 전제로 생활자단체임을 자임하기 시작한 민단의 숙원사업은 외국인지방참정권 획득에 맞추어졌고 한국정부도 자국 내 정주의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측면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 유권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지방참정권 제정을 암시적 공약으로 내걸던 일본 민주당이 2009년 당시 2/3에 달하는 의석수를 국회에서 차지하면서도 법안상정조차 못했던 사실을 상기시켜본다면 향후 재일코리안에게 정치참여가 허락될만한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이야말로 재일코리안의 권익 상황이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주권자인 아이누나 부라쿠문제 등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여타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을 위한 입법과 예산조치가 마련된 점을 상기시켜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재일코리안을 겨냥한 헤이트스피치/크라임(hate speech/crime) 규제 논의가 표현의 자유 논의에 휘말려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것도 피해당사자인 재일코리안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발언권도 갖지 못하는 데 비롯된 일이다. 정치참여와 인격권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의 여건은 재특회(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를 비롯한 배외주의단체들이 내세우는

17) 2002년 시가현 마이바라초(滋賀縣米原町, 현재는 합병되어 마이바라시)를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당시 마이바라초는 지자체 합병문제에 한해 외국인주민의 주민투표 참여를 허용했다.

‘특권’ 논리가 횡행하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수급권은 물론 거주권마저 항시 위협받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4. 불신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재일코리안

여기서는 재일코리안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속성인 대한민국 국민(내지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 재일코리안은 모국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1> 분단체제하 남한의 외부자들

<p>정치적 적, 이적행위자</p> <p>-----</p> <p>간첩, 남한 내 이적행위자 (반체제 활동가) 최고 권력자의 중요한 정적 민주화 운동가</p> <p>잠재적 적 (비시민 혹은 2등 시민)</p> <p>-----</p> <p>한국전쟁기 피학살자 유가족 한국전쟁 전후 월북자 유가족 여타 이산가족</p> <p>재일교포 (조총련계) 남북어부 북과공작원</p> <p>자본주의 질서의 위협세력</p> <p>-----</p> <p>폭력배, 부랑자 노동운동가, 빈민운동가</p>

출처: 김동춘(2013),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민중사회와 정책연구』 23, p.120.

상술한 바와 같이 재일코리안의 모국은 두 개의 분단국가이므로 이들은 본국으로부터 항시 충성을 요구받음과 동시에 의심을 받고 있다. 김동춘은 이와 관련해 <표 1>과 같이 재일코리안을 대한민국의 외부자들 가운데 잠재적 적으로 분류한다. 그는 총련계를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앞서 논했다시피 재일코리안 ‘누구나’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총련계로부터의 전향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민단의 실정 또한 재일코리안이 모국사회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취약성은 또한 재일코리안이 모국사회와의 단절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2, 3세 재일코리안의 모국수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이 모국과 재일코리안사회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앞둔 1962년부터 2세들의 모국수학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매년 100명 전후의 재일코리안들이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다. 그런데 <표 2>를 보듯이 1980년대 전반에 이르러 모국수학자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이텔릭 부분)이 눈에 띈다.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부터 다시 100명 수준을 회복했고 이후 안정세가 지속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¹⁸⁾

이 원인을 단순히 세대경과에 따른 모국과의 유대관계 상실로 결론짓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여러 건의 재일한국인간첩날조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사건들의 내역¹⁹⁾에 대해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재일코리안 모국수학생 수만 해도 적어도 120명 이상에 달했고 취조를 받은 이들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재일코리안이 국내에서 북과의 관계를 의심받았다. 오사카총영사를 지낸 조일제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간첩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에서 간첩을 잡지 않으면 할 말이 없잖아. 간첩을 잡기는 잡아야 되거든요. 잡으라니까 그게 흔한 것 아니잖아. 제일, 제일 편안하게 간첩 잡을 수 있는 것,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건 재일교포야.

그래서 재일교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함을 받고 그래서 피해를 받아먹은 게 있어가지고 본국의 인식이 자꾸 나빠져 가니까...²⁰⁾

이 같은 증언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재일코리안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모국사회로부터도 불신과 외면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통의 단절이 한층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 2010년 시점에서 민단중앙본부 문교부가 파악하고 있던 모국수학생 수는 200명 선이다. 참고, 「韓國 國政參政權과 在日韓國人 母國修學生의 政治參與意識」,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1권, 2011, pp.116-117.

19) 木村貴(2012), 「韓國 「民主化」 のなかの在日韓國人スパイねつ造事件: 四半世紀のときを超えて」, 岩波書店, 『世界』 835; 김효순(2015), 『조국이 버린 사람들: 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의 기록』, 서해문집 등을 참조할 것.

20) 조일제(전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터뷰.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제37화 '또 하나의 분단, 재일동포」, 2001년 7월 6일.

<표 2> 재일한국인의 모국수학 상황 (재외동포교육진흥원 수료자)

연도	진흥원 수료자	대학진학자	연도	진흥원 수료자	대학진학자
1962	11	3	1980	92	129
63	10	6	81	57	61
64	12	14	82	63	67
65	14	5	83	72	70
66	43	25	84	73	58
67	81	26	85	71	51
68	68	55	86	88	87
69	91	49	87	108	101
1970	124	62	88	152	100
71	135	68	89	144	146
72	124	82	1990	120	127
73	99	88	91	111	125
74	145	96	92	76	149
75	121	108	93	81	79
76	97	91	94	133	84
77	95	75	95	121	76
78	125	80	합계	3087	2528
79	130	85			

출처: 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 『図表でみる韓国民団50年の歩み』, (東京: 五月書房, 1997).

이 같은 정황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 모국수학 중이던 김병진은 보안사령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 채용된 인물이다. 통번역 업무에 배치된 그는 한국어가 서투른 피의자들의 조사에도 통역으로 참여했다. 그는 보안사가 재일코리아들을 간첩으로 날조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군인들의 목표가 뭐냐면 진급입니다. 진급을 위해서는 훈장을 따라 되거든요. 그래갖고 부하를 시켜가지고 간첩을, 간첩을 잡으면 진급합니다. 꼭 상관을 위해서 부하들은 간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²¹⁾

그의 주장대로라면 누군가의 입신출세의 도구로 재일코리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바쳐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들이 보안사 등의 간첩날조 움직임에 휘말리게 된 것은 재일코리아사회가 남북의 공존할 뿐만 아니라 북송사업에

21) 보안사에 구인 당했다가 1984부터 86년까지 근무를 강요받은 김병진에 대한 인터뷰. MBC TV(200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37화 '또 하나의 분단, 재일동포」, 7월 6일 방영. 김병진은 보안사의 행태를 폭로한 저서를 펴낸 바 있다. 김병진(2013), 『보안사: 어느 조각 간첩 의 보안사 근무기』, 이매진.

따라 대부분이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당수 재일코리안들은 이미 한국 내 친인척관계가 희박해진 상태였다. 따라서 간첩사건을 날조하기가 쉬웠던 것이다.

앞서 제시한 김동춘의 분석대로 재일코리안은 자국민임에도 외부자(그의 표현에 따르면 ‘잠재적인 적’)로서 2007년까지 모국에서 참정권마저 제한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에 변화를 준 것은 이건우(李健雨)라는 모국수학생 출신의 재일코리안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한 결과이다.²²⁾ 즉 재일코리안의 모국 권리상황이란 공민권운동 당시의 흑인과도 유사했던 것이다.

한편, 오늘날까지도 재일코리안의 모국 정부와의 소통 창구는 민단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재일코리안으로 하여금 정치적, 사상적 자유의 폭이 내국인은 물론 여타 재외동포들과 비교해 봐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민단 또한 재일동포 ‘생활자단체’임을 내걸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권익문제 대처에 있어 모국정부의 인식 이상으로 전향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재일코리안의 일본 내 권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일견 일본 내 문제로만 국한하여 인식하기가 쉬우나, 실제로는 지금까지 검토해온 바와 같이 이들의 모국 내 지위가 일본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5. 결 론

문제는 재일코리안사회에서 이 같은 인식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모국사회와의 단절이 오래된 데다가 외국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한일 양국

22) 이건우(李健雨)는 200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승소할 때까지 1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소송을 제기했고 세 번째 소송인 헌법소원에서 승소했다. 이는 민단이 아닌 재일코리안 개인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여 쟁취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소송 제기 이유로 ‘재일국민’의 특수성을 들었고 여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와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재일코리안이라는 존재가 ‘역사적 경위’ 즉 과거사문제와 직결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비롯된다. 일본의 동화압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국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마련되어야 하며, 모국의 주권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질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백병규, 「해외동포의 참정권 보장 방안 “왜 재일국민선거권 회복운동인가”」 (5회), 한국인권행동 홈페이지, 2008년 1월 3일.

http://www.hrkorea.org/bd/zboard.php?id=1004&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0 (2015년 11월 22일 검색)

에서 오랫동안 민주주의에서 배척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국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국과의 소통 개연성 인식과 더불어 민주주의적 리테러시(democratic literacy)의 소양과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모국 정치참여는 내국인이나 여타 재외국민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재일코리안 각기가 지니고 있는 지극히 침예한 정치성과 더불어 이와 대조적인 한일 양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정치적 취약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당사자는 물론 한일 양국사회에서도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1965년체제’는 일본사회의 차별과 모국의 분단이라는 이중의 고초를 겪고 있는 재일코리안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 논리에 편입될 것을 요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은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한일협상의 자리에서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조선학교의 폐쇄를 조건으로 자국민의 민족교육을 포기해도 된다고 말했던 것은 이를 상징한다.

분단국가라는 정치적 다양성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치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사는 이들의 존재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모국사회와의 가교역할이 기대됐던 재일코리안 청년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음으로 인해 소통은커녕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재일코리안이 여타 재외동포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한국어능력이 떨어지는 이면에는 일본당국에 의한 민족교육 탄압 외에도 이 같은 모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한일 간의 인적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일코리안이라고 예외로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측면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내국인과의 혼인 등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존재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는 대한민국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검토란 본고 논의의 연장선상이 있는 것이며, 본고 문제의식의 출발점 또한 여기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국가와 유리된 존재로서의 ‘자이니치(在日)’라는 정체성은 그동안의 ‘역사적 경위’를 감안한다면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국과의 유대를 도외시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유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일본의 외국인으로 남고자 하는 한, 양국 사회에서의 권익주장에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제 모국 국정참정권을 얻은 상황에서는 이를 제대로 행사해야만 이들이 갈망하는 일본 지방참정권 획득에서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OK Times』 ; 『프레스리안』 ; 『朝日新聞』 ; 『統一日報』 ; 『民団新聞』
- MBC TV(200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37화 '또 하나의 분단, 제일동포」, 7월 6일 방영.
- 김병진(2013), 『보안사: 어느 조작 간첩 의 보안사 근무기』, 이매진.
- 김효순(2015), 『조국이 버린 사람들: 제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의 기록』, 서해문집.
- 서경식(2012), 『역사의 증인 제일조선인』, 반비.
- 在日本大韓民国民団中央本部(1997), 『図表でみる韓国民団50年の歩み』, 五月書房.
- 鄭大均(2001), 『在日韓国人の終焉』, 文春新書.
- 김동춘(2013),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pp.110-141.
- 金雄基(2011), 「韓國 国政參政權과 在日韓国人 母国修学生的 政治参与意識」 『한일민족문제연구』 21, pp. 111-144.
- 이성(2013), 「한일회담에서의 제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1951-1965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木村貴(2012), 「韓國 「民主化」 のなかの在日韓国人スパイねつ造事件—四半世紀のときを超えて」, 岩波書店, 『世界』 835, pp. 285-292.
- 趙慶喜(2012), 「在韓在日の現在: 曖昧な「同胞」の承認にむけて」, インパクト出版社, 『インパクト ション』 185, pp. 152-161.
- 中村一成(2015-2016), 「思想としての朝鮮籍」, 岩波出版, 『世界』 各号.
- 文京洙(2009), 「<在日>, "国民"の狭間を生きて」, 『立命館言語文化研究』, 立命館大学国際言語文化研究所, 第20卷第3号, pp. 145-150.
- 민단 홈페이지. <https://www.mindan.org>
- 한국관광공사 관광조사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
- 한국인권행동 홈페이지. <http://www.hrkorea.org>
- 日本政府観光局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
-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15년 11월 22일>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 要 旨 >

「1965年体制」と在日コリアン
—強度の政治性が生んだ政治的脆弱性—

金雄基

本稿は在日コリアンが韓日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た時点における位相について論ず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その日本における地位の向上がいかなる理由によって前進と後退を繰り返しているのか、その構造的な理解に焦点を置いている。これまで在日コリアンの地位については日本のマイノリティーとしての観点から論じられることがほとんどである一方で、彼らのほとんどが国籍を有する韓国の国民としての権利というアプローチはほとんど行われることがなかった。その理由として在日コリアンと母国の間に横たわる不幸な「歴史的経緯」の存在が母国の活用という発想から在日コリアンを遠ざけてきた点を指摘している。

韓日両国政府による交渉の妥結によって、在日コリアンが得ることになった日本における市民権の権利は居住権(rights of adobe)、すなわち「追い出されない権利」のみに留まったのとは対照的に、強固な反共イデオロギーに裏打ちされた分断国家の論理が在日コリアン社会にも影響を及ぼす出発点となった。韓国社会の外部者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は常に忠誠を求められる一方で疑念を持たれる存在となり、軍事政権下においては120名以上母国修学生が政治犯に捏造されただけでなく、韓国が民主化された現在においても、在日コリアン社会における多様性に対する承認を得られていないまま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は在日コリアン各自が持つ強度の、かつ多様な政治性に起因する一方で、その政治的立場は極めて脆弱という特徴によるものである。こうした点が民族団体が日本においても、本国の意向よりも積極的な権利主張を行うことのできない制約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つまり、在日コリアンの権利状況は居住国日本のそれだけでなく、国籍の存する韓国のそれを合わせて考慮する必要があると言える。

‘The 1965 System’ and Its Impacts on Koreans in Japan
—The Origin of Two-Sided Political Vulnerability in South Korea and Japan—

Kim, Woong-Ki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reasons why Koreans in Japan have not been able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in Japan.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how their social status in South Korea, a divided nation overwhelming anti-communism, has imposed constraints on improving status in Japanese society. At the same time, a fact that pro-norths and pro-souths live altogether imposes political vulnerability on them.

South Korean-Japanese diplomatic normalization brought Koreans in Japan logics of South Korean politics backed by anti-communism. Their loyalty toward the nation of South Korea has been endlessly doubted since both pro-Norths and pro-Souths are living altogether in Japan. From late 1970s to 1980s, many of youngsters were concocted by South Korea's dictatorial authorities under the name of spy of North Korea. Even after South Korean society achieved democratization, diversity of political value existing in the community of Koreans in Japa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ir mother nation. This situation becomes constraints for them to assert the improvement of their social status in Japan. For the purpose of the enhancement of soci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they should consider not only their own circumstance in Japan but also that in their mother nation.